

F - 5.

번호	정 리 절 차	일정	비 고
1	정리절차 개시신청	D - 15	- 관할 지방법원 정리재판부
2	재산보전처분결정 및 법정관리인 선임	D	- 신청 후 결정일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
3	비용예납 결정	D	- 자산규모 비례 비용 결정(추후 정산)
4	조사위원 선임 및 실사	2번후 3개월 이내	-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며 개시결정의 근거가 됨
5	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	4번후 14일 이내	- 대부분 법정(보전)관리인 유임
6	조사보고서 제출	5번후 1개월 내	-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 - 관리인 조사보고(정리절차의 개시사정, 업무재산의 경과와 현황등) - 정리채권자등의 조사(정리채권자, 정리담보권자, 주주에 관한사항)
7	정리채권, 정리담보권, 주식신고	5번후 1개월 내	- 성명, 주소, 채권내용, 담보권내용등을 법원에 신고 - 신고된 주요내용 조사
8	제1회 관계인집회,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견 진술	5번후 45일 정도	- 부인권 행사 - 의견진술 및 정리계획안 초안 작성
9	정리계획안 작성 및 제출	8번후 3-4개월	- 관리인, 정리회사, 신고한 채권자, 주주에 대한 계획서 법원에 제출 - 제2회 관계인 집회보다 1주일 정도 일찍 제출
10	제2회 관계인 집회	8번후 3-4개월	- 정리계획안 심리 후 찬반 확인
11	제3회 관계인 집회	10번후 3-4개월	- 제2회 집회 부결시 정리계획안 결의 및 최종안 작성
12	정리계획안 인가	D+1년 이내	- 인가시 법원은 즉시 인부 결정 - 인가요건 . 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과 합치 . 계획이 공정, 형평, 수행가능해야 . 결의를 성실, 공정한 방법으로 행할 것 . 기타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꼭 인가해야 될 경우
13	정리계획 수행	12번후 즉시	- 계획 인가시 지체없이 계획 수행
14	정리절차 종결	12번후 10년 이내	